

의안번호	2209461
의 퇴 인	김도읍 의원
회 답 일	2025. 5. 22.
추계번호	25F199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8(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교통약자 친화 차량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－ 공제대상: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 ※ 교통약자: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－ 공제율: 연구개발 비용의 10% ※ 단, 연구개발 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의8(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지출한 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5조의8 신설)
 - 현행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는 기술을 일반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, 국가전략기술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공제 적용
 - － 교통약자 친화 차량과 관련된 기술은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

대해 규정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[별표 7] 및 [별표 7의2]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기술로 구분되어 기업규모별로 당기분 기준 2~25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
 ※ 교통약자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‘교통약자법’)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

- 개정안은 기업이 지출한 교통약자 친화 차량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10%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공제대상: 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기업
 - 공제율: 연구개발비의 10%
 - ※ 단, 공제를 적용받는 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 - 다만,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중견기업 등으로 전환된지 5년 이내의 기업의 경우, 기존 R&D 세액공제의 공제율보다 신설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작음에 따라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[표 1] 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비에 대한 현행 및 개정안의 세액공제율: 당기분 기준
 (단위: %)

기업규모		현행(일반기술)	개정안
중소기업		25	10
중견기업	중소기업 졸업 3년 이내	20	
	중소기업 졸업 3~5년	15	
	중소기업 졸업 5년 이상	8	
대기업		최대 2 ¹⁾	

주: 1)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‘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× 1/2’로 계산함
 1. 굵은 글씨는 현행 세액공제율이 개정안보다 작은 경우임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규모별로 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비에서 교통약자 친화 차량에 대한 정의, 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교통약자 친화 차량 범위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에 대해 예측할 수 없음

- 또한, 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통계가 부재하여 향후 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참고로,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법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」에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 등의 통계는 존재하나, 관련 R&D 비용 지출 등에 대한 통계는 부재

[표 3]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현황: 2023년 기준

(단위: 대, %)

저상버스 도입현황	시내버스			농어촌버스			마을버스		
	총대수	저상버스	도입률	총대수	저상버스	도입률	총대수	저상버스	도입률
전국기준	34,990	13,600	38.9	2,073	66	3.2	5,556	899	16.2
특별교통 수단 도입현황	특별교통수단 ¹⁾			대체수단					
	법정 운행대수	운행대수	보급률	총대수	임차택시	바우처 택시	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	기타 ²⁾	
전국기준	4,535	4,600	101.4	19,951	369	15,616	244	3,722	

주: 1)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함

2) 대체수단 중 기타는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,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등을 의미함

자료: 국토교통부, 「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」, 2024.10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